

2026년 U-SPACE 제품개발 통합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와 (재)울산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메이커스페이스(U-SPACE) 구축·운영사업에서 지역 내 (예비)창업기업의 신속한 제품개발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U-SPACE 제품개발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울산광역시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명) 2026년 U-SPACE 제품개발 통합지원 프로그램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0,000천원/10개사 지원
 - * 기업별 차등 지원(A등급 : 10,000천원, B등급 7,000천원, C등급 5,000천원)
 - * 지원금은 재료 또는 용역 공급기업 지급
 -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지원
- (지원기간) 2026. 6. ~ 2026. 9.(4개월)
 - * 과제 수행 후 사업은 3년간 성과 추적관리 대상임을 숙지

2. 지원대상(신청기업)

- (지원자격) 울산 지역 내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중소기업
 - 예비창업자: 협약체결 전까지 울산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스타트업·중소기업: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
- (신청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사업에서 정하는 신청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3년 이후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창업 3년 이후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

구분	지원분야	지원내용	비고
필수	1:1 전담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및 참여 1:1 매칭을 통한 기업 애로 및 니즈 파악 ■ 시제품 제작과정 점검 ■ 선정기업 별 수정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편성 ■ 주관 및 참여 보유 시설/장비 인프라 활용 지원 ■ 사업비 사용 및 진행 현황 점검 	
필수	역량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제조 특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PACE 시설·장비 활용, 제품 제작 프로세스, 제품 외형 설계, 마케팅 등 단계별 실무교육 실시 - 기업별 최소 80% 이상 교육 수강 필수 	총 4회 진행 (1회/2시간)
필수	소프트 목업 및 제품화 직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양산 전 최종 검토를 위한 워킹 목업 제작 지원 ■ 제품화에 필요한 MJF 시양산 지원 ■ 제품의 초도물량 및 소규모 생산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성(금형 및 판매품 제작 등) 비용 지원 불가 ■ 제품의 크기, 형태, 구현을 통한 시제품 외형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셉 디자인, 제품 초기 및 최종 검토용 목업 * 지원 기업의 제품 3D 렌더링 파일 CAD파일 등 보유 필수 	평가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VAT 별도, 재료 및 용역기업 지급)
필수	제조전문가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메이커들의 제품 생산 거점 확립을 위한 제조 생산 전문가와의 매칭 및 1:1 심화 컨설팅 지원 	기업별 최대 5회 매칭 가능
필수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간 교류 및 협력 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1회 (8월 중)
선택	혜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투자를 희망하는 일부 유망기업 대상 투자유치 전문 프로그램 제공 ■ 지역 내 창업 유관기관 협업 페스티벌 연계 지원을 통한 우수기업 제품 전시 및 판매공간 제공 ■ 판로개척 및 디지털 제조 등 최신 트렌드 교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기업의 실무 역량 제고 지원 	기업 선정 후 개별 안내 예정
선택	후속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종료 후 기업별 성장 지원을 위한 타 지원사업 연계 및 후속지원 방안 마련 	

- (소프트 목업 및 제품화 직접지원) :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지원,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지원

■ 관련 근거 :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별표 제2호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

■ 편성 지침 :

1) 재료비

- 사업용 및 교육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교육 기자재 등에 사용되는 소재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기타 공작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 비품비)

※ 추후 지원금 지급 요청 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검수조서 등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필수

2) 외주용역비

-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자료 제작 등 일반 업무의 용역계약 대행 비용

※ 추후 지원금 지급 요청 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용역 기업 사업자등록증, 검수조서 등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필수

4.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제출서류 사전검토 → 대면 평가

- (평가항목) 붙임1 참조

- 신청서 및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대면 발표 평가
- 대면 발표 평가는 외부 전문가 5~7인 내외 구성하여 선정평가 추진

- (선정기준)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계산함

- 최고 또는 최저점수 중 같은 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산함

- 평가 종합 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로 하며, 종합 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가점사항: U-SPACE 장비* 사용이력(2점), U-SPACE 장비 활용계획(3점)

* UTP 홈페이지(<https://www.utp.or.kr/main.php>) 참고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미달 시 재공고할 수 있음

5. 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26. 05. 20.(수) ~ 06. 04.(목) 18:00
- ※ 접수 마감 시간 이후 제출 건은 접수 불가
- 상세 추진일정

수혜기업 모집	▶	선정평가	▶	1:1 전담매칭	▶	협약 및 안내	▶	필수교육
잠재력이 높은 제조 메이커 모집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진행		현황, 애로사항 등 사전 진단 후 사업비 재편성		협약체결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CMF,모델링, 시제품 등 특화 필수교육 이수
~06. 04. 18:00		26. 6월 중 예정		26. 6월 중 예정		26. 6월 중 예정		26. 6월 중 예정
제품화 직접지원 및 제조전문가 컨설팅			▶	네트워킹	▶	결과보고	▶	사후관리 등
장비 제작지원 및 제조창업 관련 자금 지원, 제조생산 전문가 매칭을 통한 심화 컨설팅 지원 * 재료, 기술, 장비 직접지원				선정기업 대상 중간보고 및 협업 네트워킹		성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후속지원 및 성과추적
26. 06. ~ 09.				26. 8월 중 예정		26. 10월 중 예정		26. 10월 중 예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업 진단 이후 내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예정
- A등급(90점 이상) / B등급(80점 이상) / C등급(70점 이상)
- *예시) A등급: 10,000천원, B등급: 7,000천원, C등급: 5,000천원

6.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05. 20.(수) ~ 06. 04.(목)
- (접수기간) : 2026. 05. 20.(수) ~ 06. 04.(목) 18:00
- (신청방법) : 울산TP 홈페이지(www.utp.or.kr)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접 수 처	임경환 연구원 (052-219-8676, rudghks3800@utp.or.kr)
--------------	---

7.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연번	제출서류	서식 여부	비고
1	프로그램 신청서	붙임1	필수
2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	붙임2	필수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업 제출	해당 시(3개월 이내 발급)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제출	해당 시(3개월 이내 발급)
7	재무제표	기업 제출	해당 시(2023년~2025년)
8	3D 모델링, 2D도면 파일 등* *파일 형식 : jpg, png 등 이미지 파일 첨부	기업 제출	해당 시(제조업)
9	U-SPACE 보유장비 활용 계획	기업 제출	해당 시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기업 부담
- 계획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계획서의 붙임으로 제출
-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증빙서류 미비, 제출서류 누락, 기재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사업비 구성 및 지급 방법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제품화 지원), 사업 협약일 이전발생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음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 산정(현금 부담, 현물 불가능)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기업에서 별도 부담
 - 기업에서 총사업비를 선집행 후,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최종보고서 및 결과물 확인 후 선정기업으로 직접 지급(후 정산)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비 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본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단, 협약기간 내 무협의를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 사업비 사용 가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1.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2.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3.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4.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음
 -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

10. 이의신청

- 이의신청의 범위

-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 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류/발표/현장) 등에 이의가 있는 때

- 이의신청 방법(재단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는 경우)

- (신청기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5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제출서류) [붙임 3. 이의신청서] 작성 후 공문과 함께 AI미래본부 부서로 이메일(rudghks3800@utp.or.kr) 제출

- (작성방법) 신청기업(기관) 혹은 신청자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 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적어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유의사항)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

11.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요령
- 메이커 활성화(스페이스) 지원사업 운영지침

12.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문 의	임경환 연구원 (052-219-8676, rudghks3800@utp.or.kr) 김채정 연구원 (052-219-8673)
------------	---

붙임1 대면평가 평가 기준(안)

구분	공통지표					가점		합계
	사업목표의 적절성	사업추진 및 수행내용	수행기업 역량	기대 효과	사업비 편성	U-SPACE 사용이력	U-SPACE 활용 계획	
배점	20	20	20	20	20	2	3	100*

구분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공통 지표	사업목표의 적절성	◦ 본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20	20
	사업추진 및 수행내용	◦ 추진전략 및 지원 필요성	10	20
		◦ 개발제품의 기술 경쟁력	10	
	수행기업 역량	◦ 참여인력의 전문성	10	20
		◦ 보유 인프라 등의 적절성	10	
	기대효과	◦ 상용화 가능성	10	20
		◦ 매출 및 고용 창출 가능성	10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 적절성	20	20
가점	U-SPACE 장비 활용	◦ U-SPACE 장비 사용이력	2	5
		◦ U-SPACE 장비 활용 계획	3	
합계			100*	

* 가점을 반영한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점으로 처리한다.